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8
----------	-----

제출년월일: 2026. 5. 27.

제 출 자: 송파구청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 사항과 근거 법령 조항을 현행화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 사항을 반영하여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위임사무 삭제(안 제1조, 제5조, 별표 제10호)
- 나.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으로 전환된 위임사무 조항 신설(안 별표 제12호, 제22호, 제27호~제34호)
- 다.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등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 2)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제2항
  - 3)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여성보육과(성별영향평가)

라. 기 타

1) 개정문안, 신·구조문 대조표, 관계법령,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별첨

2) 입법예고: 2026. 3. 26. ~ 2026. 4. 15. (20일)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중 “동장, 보건소장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을 “보건소장 및 동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위 입 사 무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1. 삭제<99.8.10>			
2. 시체 매장( 화장개장)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위임	동장
3. 약국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약국의 개설등록	◦ 「약사법」 제20조	”	”
나. 약국의 개설등록변경	◦ 같은 법 제20조제2항	”	”
다.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 같은 법 제21조의2	”	”
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 같은 법 제21조의3	”	”
마. 폐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22조	”	”
바. 약국제제 등의 제조 품목신고	◦ 같은 법 제41조	”	”
사.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	”
아. 시정명령	◦ 같은 법 제69조의4, 같은 법 제75조의2	”	”
자. 업무의 개시명령 등	◦ 같은 법 제70조	”	”
차.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	”
카.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4조	”	”
타.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 같은 법 제75조	”	”
파.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같은 법 제76조	”	”
하. 청문실시	◦ 같은 법 제77조	”	”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거. 약사감시원 임명	◦같은 법 제78조	"	"
너. 등록증 등의 갱신·재발급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
더.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81조	"	"
러.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	"
4. 의료기기 판매업, 임대업 및 수리업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의료기기판매업, 임대업 및 수리업의 신고, 변경신고, 폐업 등의 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제16조	"	"
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2조	"	"
다. 판매중지·회수 폐기 및 공표명령, 회수대상 의료기기 폐기 신청 등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	"
라. 사용중지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	"	"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같은 법 제36조	"	"
바. 청문	◦같은 법 제39조	"	"
사. 과징금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8조	"	"
아. 과태료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6조	"	"
자. 검사명령(수리업)	◦같은 법 제33조	"	"
차. 의료기기 감시원의 임명	◦같은 법 제40조	"	"
카. 신고증 재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	"
5.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 개설신고 수리	◦「의료법」 제33조제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	"
나. 의원 등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다. 폐업·휴업의 신고 수리 및 폐업신고 수리 상황의 통보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
라. 업무개시 명령	◦같은 법 제59조제2항	"	"
마. 보고와 업무 검사 등	◦같은 법 제61조	"	"
바. 시설, 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그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63조 및 제84조	"	"
사. 업무정지, 개설허기취소 또는 폐쇄명령, 그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64조, 제84조	"	"
아.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
자.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
6.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법」 제35조	위임	보건소장
7. 안마시술소안마원, <b>접골소</b> , 침구시술소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등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	"
나. 접골소, 침구시술소의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 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의료법」 제81조	"	"
다. <삭 제>			
라. <삭 제>			
8.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개설등록 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
나. 폐업등록사항변경 신고	◦같은 법 제13조	"	"
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	"	"
라. 영업정지등록취소	◦같은 법 제24조	"	"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3조제2항	”	”
바. 양도양수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	”
9.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개설등록 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	”
나. 폐업등록사항 변경신고	◦같은 법 제13조	”	”
다. 양도양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
라. 영업정자등록취소	◦같은 법 제24조	”	”
마.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	”	”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3조제2항	”	”
10.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위임	보건소장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소속공무원의 승급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6조	”	”
라.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제30조의5	”	”
1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설차양도폐기 및 중지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
나. 신고필증 교부 및 재교부	◦같은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	”	”
다. 변경신고(개설자명칭관내이전 신고)	◦같은 규칙 제3조제4항	”	”
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변동신고	◦같은 규칙 제3조제6항	”	”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마. 부적합 장치에 대한 관리 (사용금지명령 및 안전조치 등)	◦같은 규칙 제8조제3항	”	”
바. 안전관리책임자 손해임 신고	◦같은 규칙 제10조	”	”
사. 지도감독	◦같은 규칙 제16조	”	”
12. 감염병예방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나. 감염병 표본감시 등	◦같은 법 제16조	”	”
다. 역학조사	◦같은 법 제18조, 18조의2, 1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
라. 건강진단	◦같은 법 제19조	”	”
마.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같은 법 제46조	”	”
바. 소독업무의 대행	◦같은 법 제56조	”	”
사. 소독 의무	◦같은 법 제51조	”	”
아. 소독업의 신고 등	◦같은 법 제52조	”	”
자.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53조	”	”
차.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같은 법 제47조	”	”
카. 서류제출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57조	”	”
타. 시장명령	◦같은 법 제58조	”	”
파. 영업정지 등	◦같은 법 제59조	”	”
하. 청문	◦같은 법 제75조	”	”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거.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시행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	”
너.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같은 법 제27조	”	”
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 같은 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러. 예방접종 이상반응 및 피해보상 신청 접수 등	◦ 같은 법 제29조,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
1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신고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	”
나. 검진	◦ 같은 법 제8조	”	”
다. 역학조사	◦ 같은 법 제10조	”	”
라. 치료권고	◦ 같은 법 제14조	”	”
마. 치료 및 보호조치 등	◦ 같은 법 제15조	”	”
바. 부양가족의 보호	◦ 같은 법 제20조	”	”
14.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실행계획수립시행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	”
나. 금연절주운동 전개	◦ 같은 법 제8조	”	”
다. <삭 제>			
라.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자판기 성인 인증 장치 미부착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	”
마. 금연흡연구역의 구분지정 여부 단속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34조제3항제2호	”	”
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사. 사업장, 의료기관, 단체에 대한 보건교육 계획 및 결과자료 요청	◦ 같은 법 제12조제3항	”	”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아. 국민영양 관리사업	◦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 제10조	”	”
자. 구강보건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시행	◦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	”
차. 구강건강사업 시행	◦ 같은 법 제18조	”	”
카. 건강증진사업	◦ 같은 법 제19조	”	”
타. 혼전의 <b>건강 확인</b> 을 위한 검진 및 처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
15. <b>농지대장</b> 에 관한 사무		위임	동장
가. <b>농지대장</b> 등본열람교부	◦ 「농지법」 제50조제1항	”	”
나. <b>농지대장</b> 작성 비치	◦ 같은 법 제49조제1항	”	”
다. 거주지이전 <b>농지대장</b> 송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4항	”	”
16.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		위임	동장
가. 장애인용차동차표지의 발급 등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	”
나.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
다. 장애인등록증 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라. <b>장애 정도</b> 의 조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마. 장애상태 및 장애진단사항의 확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바. 등록증의 반환명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사. 장애인증명서의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아. 등록장애인의 기록 및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17.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 「의료급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위임	동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18. 삭제<2001.3.6>			
19. 삭제<2001.3.16>			
20. 의료기관 세탁물관리에 관한 사무 가.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 변경신고,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나.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다. 세탁물의 처리 라. 감염방지 예방교육관리 마. 세탁물처리 실적제출 바. 지도감독	◦ 「의료법」 제16조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 같은 규칙 제3조  ◦ 같은 규칙 제4조  ◦ 같은 규칙 제8조  ◦ 같은 규칙 제9조  ◦ 같은 규칙 제11조	위임 " " " " " "	보건소장 " " " " " "
21. 의료기관의 영리목적환자 유인행위 등 금지행위 중 일부 가능 사전 승인 가.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 교통편의 제공 등 경제적 사정 등에 의한 사전승인	<신설 2004.6.7> ◦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임 "	보건소장 "
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정신건강복지법)에 관한 사무 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처분과 이에 따른 청문 나.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정신재활시설의 폐자·휴지 및 재개신고의 수리 라.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마.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진단 및 보호 신청의 접수, 진단의뢰, 입원조치 및 통지 바.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의뢰 및 통지 사. 퇴원, 가퇴원, 처우개선 명령 및 통지	◦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32조  ◦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29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59조	위임 " " " " " " " "	보건소장 " " " " " " " "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타. 과태료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파. 산후조리교육기관의 교육실시 결과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	"
하. 산후조리원 위반사실 등의 공표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	"
25.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따른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신설 2012.5.1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위임	보건소장
26.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항		위임	동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같은 법 제6조의3	"	"
27.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의약품 판매업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약사법」 제45조	"	"
나.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 도매상 관리자 신고	◦같은 법 제4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
다. 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
라.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	"
마. 시정명령	◦같은 법 제69조의4	"	"
바. 업무개시명령 등	◦같은 법 제70조	"	"
사.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	"
아.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	"
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
차. 허가증 등의 갱신 및 재발급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카.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1조	"	"
타. 지위 승계 신고	◦같은 법 제89조	"	"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	"
28.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	◦「약사법」 제44조의2	"	"
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폐업신고 등	◦같은 법 제44조의2	"	"
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신고	◦같은 법 제44조의5	"	"
라.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	"
마. 시정명령	◦같은 법 제69조의4	"	"
바.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	"
사. 등록취소	◦같은 법 제76조의3	"	"
아. 청문실시	◦같은 법 제77조	"	"
자.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	"
29. 마약취급자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
나.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	"	"
다. 폐업 등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8조	"	"
라.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	"
마.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같은 법 제13조	"	"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바.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	"
사.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	"
아.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같은 법 제44조	"	"
자. 청문의 실시	◦같은 법 제45조	"	"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
카. 마약류 감시원 배치	◦같은 법 제48조	"	"
타.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같은 법 제51조의5	"	"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
30.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 등의 신고	◦「약사법」 제46조의2	"	"
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	"
다. 시정명령	◦같은 법 제69조의4	"	"
라. 신고 수리 취소와 업무정지 등	◦같은 법 제76조	"	"
마. 청문	◦같은 법 제77조	"	"
바. 신고증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
사.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89조	"	"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	"
3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 등의 신고	◦「의료기기법」 제18조의2	"	"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2조	"	"
다. 신고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같은 법 제36조	"	"
라. 청문	◦같은 법 제39조	"	"
마. 신고증의 재발급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4조	"	"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의료기기법」 제56조	"	"
32.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결핵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결핵예방법」 제5조제3항	"	"
나.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같은 법 제10조	"	"
다. 결핵 검진	◦같은 법 제11조	"	"
라. 결핵예방접종	◦같은 법 제12조	"	"
마. 업무중사의 일시제한 및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	"
바. 입원명령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	"
사.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
아. 결핵환자 등의 의료	◦같은 법 제18조	"	"
자.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 및 지원	◦같은 법 제19조	"	"
차. 과태료	◦같은 법 제34조	"	"
33.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8조	위임	보건소장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같은 법 제31조 및 제31조의3	"	"
나.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같은 법 제35조	"	"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다.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신고 등	같은 법 제35조의2	"	"
라.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34조	"	"
마. 구급차 등의 운용신고, 말소신고, 운행연한 연장 등	◦같은 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제46조의2	"	"
바. 응급장비 설치 양도·폐기·이전 신고	◦같은 법 제47조의2	"	"
사.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같은 법 제50조	"	"
아.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같은 법 제55조제3항	"	"
자. 청문	◦같은 법 제56조	"	"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7조	"	"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2조	"	"
3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의료법」 제38조제1항	위임	보건소장
가. 등록 및 등록변경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	"
나. 시정명령	◦「의료법」 제63조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의 장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u>동장, 보건소장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u>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p> <p>② (생략)</p> <p>[별표] 위임사무</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위임사무) ① -----<u>보건소장 및 동장</u>-----</p> <p>② (현행과 같음)</p> <p>[별표] 위임사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사 무 명</th> <th style="width: 25%;">근 거 법 령</th> <th style="width: 25%;">위임종류</th> <th style="width: 25%;">수임기관</th> </tr> </thead> <tbody> <tr> <td>3. 약국에 관한 사무 가. ~ 나. (생략) <u>다. &lt;신 설&gt;</u> <u>라. &lt;신 설&gt;</u> <u>다.</u> 폐업 등의 신고 <u>아.</u> 약국제제 등의 제조 품목 신고 <u>라.</u> 보고와 검사 등 <u>아. &lt;신 설&gt;</u> <u>마.</u> 업무의 개시명령 등 <u>바.</u> 폐기명령 등</td> <td>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69조</td> <td>  " " " "</td> <td>  보건소장 " " " "</td> </tr> </tbody> </table>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3. 약국에 관한 사무 가. ~ 나. (생략) <u>다. &lt;신 설&gt;</u> <u>라. &lt;신 설&gt;</u> <u>다.</u> 폐업 등의 신고 <u>아.</u> 약국제제 등의 제조 품목 신고 <u>라.</u> 보고와 검사 등 <u>아. &lt;신 설&gt;</u> <u>마.</u> 업무의 개시명령 등 <u>바.</u>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69조	  " " " "	  보건소장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사 무 명</th> <th style="width: 25%;">근 거 법 령</th> <th style="width: 25%;">위임종류</th> <th style="width: 25%;">수임기관</th> </tr> </thead> <tbody> <tr> <td>3. 약국에 관한 사무 가. ~ 나. (현행과 같음) <u>다. 약국개설지의 지위 승계</u> <u>라. 공공삼각목의 지정운영 등</u> <u>마.</u> 폐업 등의 신고 <u>바.</u> 약국제제 등의 제조 품목 신고 <u>사.</u> 보고와 검사 등 <u>아. 시장명령</u> <u>자.</u> 업무의 개시명령 등 <u>차.</u> 폐기명령 등</td> <td>   ◦같은 법 제21조의2 ◦같은 법 제21조의3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4, 같은 법 제75조의2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td> <td>  " " " " " "</td> <td>  보건소장 " " " " " "</td> </tr> </tbody> </table>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3. 약국에 관한 사무 가. ~ 나. (현행과 같음) <u>다. 약국개설지의 지위 승계</u> <u>라. 공공삼각목의 지정운영 등</u> <u>마.</u> 폐업 등의 신고 <u>바.</u> 약국제제 등의 제조 품목 신고 <u>사.</u> 보고와 검사 등 <u>아. 시장명령</u> <u>자.</u> 업무의 개시명령 등 <u>차.</u>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21조의2 ◦같은 법 제21조의3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4, 같은 법 제75조의2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 " " " " "	  보건소장 " " " " " "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3. 약국에 관한 사무 가. ~ 나. (생략) <u>다. &lt;신 설&gt;</u> <u>라. &lt;신 설&gt;</u> <u>다.</u> 폐업 등의 신고 <u>아.</u> 약국제제 등의 제조 품목 신고 <u>라.</u> 보고와 검사 등 <u>아. &lt;신 설&gt;</u> <u>마.</u> 업무의 개시명령 등 <u>바.</u>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69조	  " " " "	  보건소장 " " " "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3. 약국에 관한 사무 가. ~ 나. (현행과 같음) <u>다. 약국개설지의 지위 승계</u> <u>라. 공공삼각목의 지정운영 등</u> <u>마.</u> 폐업 등의 신고 <u>바.</u> 약국제제 등의 제조 품목 신고 <u>사.</u> 보고와 검사 등 <u>아. 시장명령</u> <u>자.</u> 업무의 개시명령 등 <u>차.</u>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21조의2 ◦같은 법 제21조의3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4, 같은 법 제75조의2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 " " " " "	  보건소장 " " " " " "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카. <신 설>			
타. <신 설>			
사.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같은 법 제76조	"	"
자. 청문실시	◦같은 법 제77조	"	"
거. <신 설>			
너. <신 설>			
차.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81조	"	"
카.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	"
4. 의료기기 판매업, 임대업 및 수리업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의료기기판매업, 임대업 및 수리업의 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제16조	"	"
나. (생략)			
다.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사용중지 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 제35조	"	"
라. <신 설>			
라.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같은 법 제36조	"	"
마. 청문	◦같은 법 제39조	"	"
바. 과징금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8조	"	"
사. 과태료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6조	"	"
아. 검사명령(수리업)	◦같은 법 제33조	"	"
차. <신 설>			
카. <신 설>			
5.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개설신고	◦「의료법」 제33조제3항	"	"
나. 변경신고	◦같은 법 제33조제5항	"	"
다. 휴폐업신고	◦같은 법 제40조	"	"
라. <신 설>			
마. (생략)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카.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	"
타.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같은 법 제75조	"	"
파.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같은 법 제76조	"	"
하. 청문실시	◦같은 법 제77조	"	"
거. 약사감시원 임명	◦같은 법 제78조	"	"
너. 등록증 등의 갱신·재발급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
더.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81조	"	"
러.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	"
4. 의료기기 판매업, 임대업 및 수리업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의료기기판매업, 임대업 및 수리업의 신고, 변경신고, 폐업 등의 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제16조	"	"
나. (현행과 같음)			
다. 판매중지·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회수대상 의료기기 폐기 신청 등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	"
라. 사용중지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	"	"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같은 법 제36조	"	"
바. 청문	◦같은 법 제39조	"	"
사. 과징금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8조	"	"
아. 과태료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6조	"	"
자. 검사명령(수리업)	◦같은 법 제33조	"	"
차. 의료기기 감시원의 임명	◦같은 법 제40조	"	"
카. 신고증 재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	"
5.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 개설 신고 수리	◦「의료법」 제33조제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	"
나. 의원 등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
다. 폐업·휴업의 신고 수리 및 폐업신고 수리 상황의 통보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
라. 업무개시 명령	◦같은 법 제59조제2항	"	"
마. (현행과 같음)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바. <u>시장명령업무정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u>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및 제84조	"	"
사. <신 설>			
사.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67조	"	"
아.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2조	"	"
7.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접골 참구시술소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개설신고	◦「의료법」 제33조제3항	"	"
나. 변경신고	◦같은 법 제33조제5항	"	"
다. 휴업폐업신고	◦같은 법 제40조	"	"
라. 시장명령업무정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및 제84조	"	"
8.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 라. (생략)		"	"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3조	"	"
바. 양도양수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	"
9.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가. ~ 라. (생략)			
마. <신 설>			
바. <신 설>			
10.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휴직 및 복직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63조, 제65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	위임	구의회 사무국장
나.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	"
다. 소속공무원의 승급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6조	"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라.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2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6조	"	보건소장
1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 라. (생략)		"	"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바. <u>시설, 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제한금지 또는 시장명령, 그에 따른 청문</u>	◦같은 법 제63조 및 제84조	"	"
사. 업무정지, 개설허기취소 또는 폐쇄명령, 그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64조, 제84조	"	"
아.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
자.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
7. 안마시술소안마원, 접골소, 참구시술소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변경·휴업 등 신고 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	"
나. 접골소, 참구시술소의 개설·변경·휴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등	◦「의료법」 제81조	"	"
다. <삭 제>			
라. <삭 제>			
8.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 라. (현행과 같음)		"	"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3조제2항	"	"
바. 양도양수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	"
9.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 라. (현행과 같음)		"	"
마.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	"	"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3조제2항	"	"
10.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소속공무원의 승급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6조	위임	보건소장
라.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제30조의5	"	"
1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 라. (현행과 같음)		"	"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 입 종 류	수 입 기 관
마. 부적합 장치에 대한 관리 (사용금지명령 및 안전조치 등)	◦같은 규칙 제8조	"	"
바. ~ 사. (생략)		"	"
12. 감염병예방사무		위 입	보건소장
가. 감염병환자의 명부작성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
나. 장기예방접종	◦같은 법 제24조	"	"
다. 예방접종 증명서	◦같은 법 제27조	"	"
라. 감염병유소건에 대한 방역 조치	◦같은 법 제47조	"	"
마. 오염장소 등의 소독조치	◦같은 법 제48조	"	"
바. (생략)		"	"
사. 감염병의 예방조치	◦같은 법 제49조	"	"
아. 예방위원	◦같은 법 제62조	"	"
자. 방역기구의 운영 및 소독의 대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호	"	"
차. <신 설>		"	"
카. <신 설>		"	"
타. <신 설>		"	"
파. <신 설>		"	"
하. <신 설>		"	"
거. <신 설>		"	"
너. <신 설>		"	"
더. <신 설>		"	"
러. <신 설>		"	"
1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사무		위 입	보건소장
가. <신 설>		"	"
갸. 검진	◦같은 법 제8조	"	"
나. 역학조사	◦같은 법 제10조	"	"
라. <신 설>		"	"
마. <신 설>		"	"
다. 부양가족의 보호	◦같은 법 제20조	"	"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 입 종 류	수 입 기 관
마. 부적합 장치에 대한 관리 (사용금지명령 및 안전조치 등)	◦같은 규칙 제8조제3항	"	"
바. ~ 사. (현행과 같음)	"	"	"
12. 감염병예방사무		위 입	보건소장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나. 감염병 표본검사 등	◦같은 법 제16조	"	"
다. 역학조사	◦같은 법 제18조, 18조의2, 1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
라. 건강진단	◦같은 법 제19조	"	"
마.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같은 법 제46조	"	"
바. (현행과 같음)		"	"
사. 소독 의무	◦같은 법 제51조	"	"
아. 소독업의 신고 등	◦같은 법 제52조	"	"
자.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53조	"	"
차.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같은 법 제47조	"	"
카. 서류제출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57조	"	"
타. 시정명령	◦같은 법 제58조	"	"
파. 영업정지 등	◦같은 법 제59조	"	"
하. 청문	◦같은 법 제75조	"	"
거.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시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	"
너.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27조	"	"
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같은 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러. 예방접종 이상반응 및 피해보상 신청 접수 등	◦같은 법 제29조,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
1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사무		위 입	보건소장
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신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	"
나. 검진	◦같은 법 제8조	"	"
다. 역학조사	◦같은 법 제10조	"	"
라. 치료권고	◦같은 법 제14조	"	"
마. 치료 및 보호조치 등	◦같은 법 제15조	"	"
바. 부양가족의 보호	◦ 같은 법 제20조	"	"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14.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u>세부계획</u> 수립시행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	"
나. ~ 다. (생략)		"	"
라.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자 판기 성인 인증 장치 미부착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
마. 금연흡연구역의 구분지정 여부 단속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
사. 사업장, 의료기관, 단체에 대한 <u>교육계획 및 자료</u> 요청	◦ 같은 법 제12조 제3항	"	"
바 ~ 카. (생략)		"	"
타. 혼전의 <u>건강학</u> 을 위한 검진 및 처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
15. <u>농지원부</u> 에 관한 사무		위임	동장
가. <u>농지원부</u> 등본열람교부	◦ 「농지법」 제50조 제1항	"	"
나. <u>농지원부</u> 작성 비치	◦ 같은 법 제49조 제1항	"	"
다. 거주지 이전 <u>농지원부</u> 송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4항	"	"
16.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		위임	동장
가. ~ 다. (생략)		"	"
라. <u>장애등급</u> 의 조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마. ~ 아. (생략)		"	"
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 라. (생략)		"	"
마. <u>&lt;신 설&gt;</u>		"	"
바. <u>&lt;신 설&gt;</u>		"	"
사. <u>&lt;신 설&gt;</u>		"	"
아. <u>&lt;신 설&gt;</u>		"	"
자. <u>&lt;신 설&gt;</u>		"	"
23.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생략)		"	"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14.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u>실행계획</u> 수립시행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	"
나. ~ 다. (현행과 같음)		"	"
라.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자 판기 성인 인증 장치 미부착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	"
마. 금연흡연구역의 구분지정 여부 단속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	"
사. 사업장, 의료기관, 단체에 대한 <u>보건교육 계획 및 결과 자료</u> 요청	◦ 같은 법 제12조 제3항	"	"
바. ~ 카. (현행과 같음)		"	"
타. 혼전의 <u>건강 확인</u> 을 위한 검진 및 처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
15. <u>농지대장</u> 에 관한 사무		위임	동장
가. <u>농지대장</u> 등본열람교부	◦ 「농지법」 제50조 제1항	"	"
나. <u>농지대장</u> 작성 비치	◦ 같은 법 제49조 제1항	"	"
다. 거주지 이전 <u>농지대장</u> 송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4항	"	"
16.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		위임	동장
가. ~ 다. (현행과 같음)		"	"
라. <u>장애 정도</u> 의 조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마. ~ 아. (현행과 같음)		"	"
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 라. (현행과 같음)		"	"
마. <u>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진단 및 보호 신청의 접수, 진단의뢰, 입원조치 및 통지</u>	◦ 같은 법 제44조	"	"
바. <u>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의뢰 및 통지</u>	◦ 같은 법 제44조	"	"
사. <u>퇴원, 가퇴원, 처우개선 명령 및 통지</u>	◦ 같은 법 제59조	"	"
아. <u>입원조치의 해제, 정신의료기관의 장애에 대한 통지, 계속 입원조치 및 정신질환자, 그 보호 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지</u>	◦ 같은 법 제62조	"	"
자. <u>가퇴원 통보의 접수, 관찰 및 재입원 조치</u>	◦ 같은 법 제63조	"	"
23.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현행과 같음)		"	"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 임 종 류	수 입 기 관
나.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교부 등	◦같은 법 제12조	"	"
다. (생략)		"	"
24. 모자보건 및 산후조리원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생략)		"	"
나. 산후조리업의 신고·변경 신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의2	"	"
다.~바. (생략)		"	"
사. 산후조리업 시장명령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
아.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및 청문	◦같은 법 제15조의9 및 15조의13	"	"
자.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건강기록부의 관리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6조	"	"
차. 산후조리업 행정처분대상 기록 및 통보의무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
카. 산후조리업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7조의4	"	"
타. 과태료	◦같은 법 제27조	"	"
파. (생략)		"	"
하. <신 설>			
25.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따른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제62조 제1항제12호	위임	보건소장
<신 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 임 종 류	수 입 기 관
나. <삭 제>			
다. (현행과 같음)		"	"
24. 모자보건 및 산후조리원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현행과 같음)		"	"
나. 산후조리업의 신고·변경 신고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의2	"	"
다.~바. (현행과 같음)		"	"
사. 산후조리업 시장명령	◦같은 법 제15조의8	"	"
아.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및 청문	◦같은 법 제15조의9 및 15조의1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자.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	"
차. 산후조리업 행정처분 기록 및 통보의무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
카. 산후조리업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
타. 과태료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파. (현행과 같음)		"	"
하. 산후조리원 위반사실 등의 공표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	"
25.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따른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7호	위임	보건소장
27.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의약품 판매업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약사법」 제45조	"	"
나.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 도매상 관리자 신고	◦같은 법 제4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
다. 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
라.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	"
마. 시장명령	◦같은 법 제69조의4	"	"
바. 업무개시명령 등	◦같은 법 제70조	"	"
사.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	"
아.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	"
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과 이에 따르는 청문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 입 종 류	수 입 기 관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 입 종 류	수 입 기 관
				차. 허가증 등의 갱신 및 재발급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
				카.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1조	"	"
				타. 지위 승계 신고	◦같은 법 제89조	"	"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	"
〈신 설〉				28.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	◦「약사법」 제44조의2	"	"
				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폐업신고 등	◦같은 법 제44조의2	"	"
				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신고	◦같은 법 제44조의5	"	"
				라.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	"
				마. 시정명령	◦같은 법 제69조의4	"	"
				바.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	"
				사. 등록취소	◦같은 법 제76조의3	"	"
				아. 청문실시	◦같은 법 제77조	"	"
				자.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	"
				〈신 설〉			
가.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				
나.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	"	"				
다. 폐업 등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8조	"	"				
라.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	"				
마.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같은 법 제13조	"	"				
바.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	"				
사.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	"				
아.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같은 법 제44조	"	"				
자. 청문의 실시	◦같은 법 제45조	"	"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				
카. 마약류 감시원 배치	◦같은 법 제48조	"	"				
타.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같은 법 제51조의5	"	"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 임 종 류	수 입 기 관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 임 종 류	수 입 기 관
				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
<u>&lt;신 설&gt;</u>				30.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무	◦「약사법」 제46조의2	위임	보건소장
				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 등의 신고		"	"
				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	"
				다. 시정명령	◦같은 법 제69조의4	"	"
				라. 신고 수리 취소와 업무정지 등	◦같은 법 제76조	"	"
				마. 청문	◦같은 법 제77조	"	"
				바. 신고증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
				사.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89조	"	"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	"
<u>&lt;신 설&gt;</u>				3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 등의 신고	◦「의료기기법」 제18조의2	"	"
				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2조	"	"
				다. 신고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같은 법 제36조	"	"
				라. 청문	◦같은 법 제39조	"	"
				마. 신고증의 재발급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4조	"	"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의료기기법」 제56조	"	"
<u>&lt;신 설&gt;</u>				32.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결핵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결핵예방법」 제5조 제3항	"	"
				나.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같은 법 제10조	"	"
				다. 결핵 검진	◦같은 법 제11조	"	"
				라. 결핵예방접종	◦같은 법 제12조	"	"
				마. 업무중시의 일시제한 및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같은 법 제3조, 제4조	"	"
				바. 입원명령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	"
				사.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
				아. 결핵환자 등의 의료	◦같은 법 제18조	"	"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 임 종 류	수 입 기 관
<신 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 임 종 류	수 입 기 관
자.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 및 지원	◦같은 법 제19조	"	"
차. 과태료	◦같은 법 제34조	"	"
33.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8조	위 임	보건소장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같은 법 제31조 및 제31조의3	"	"
나.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같은 법 제35조	"	"
다.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신고 등	같은 법 제35조의2	"	"
라.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34조	"	"
마. 구급차 등의 운용신고, 말소신고, 운행연한 연장 등	◦같은 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제46조의2	"	"
바. 응급장비 설치 양도·폐기·이전 신고	◦같은 법 제47조의2	"	"
사.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같은 법 제50조	"	"
아.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같은 법 제55조제3항	"	"
자. 청문	◦같은 법 제56조	"	"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7조	"	"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2조	"	"
3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의료법」 제38조제1항	위 임	보건소장
가. 등록 및 등록변경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	"
나. 시정명령	◦「의료법」 제63조	"	"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회의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약사법

제2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①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거나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양수일부터 종전 약국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①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44조의5(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약사
2. 한약사
3. 한약업사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⑥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 도매상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두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공급자”라 한다)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위탁된 판매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도 포함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등, 우선 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중앙심사위원회, 그 밖에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의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약국·의료기관, 의약품등을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창고·점포나 사무소,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중앙심사위원회,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등 또는 우선 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업무를 하는 장소, 임상시험 용도로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장소, 그 밖의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
3. 제71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물품·의약품등의 품질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물품 수거

**제69조의4(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1의2.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3의2.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6조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아니한 경우

**제70조(업무 개시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의약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또는 폐업을 하여 의약품 구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의약품을 생산하게 하거나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1조(폐기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품 제조업자·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53조제1항·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등이나 불량한 의약품등 또는 그 원료나 재료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외품 제조업자·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판매업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게 그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제4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1항, 제42조제3항,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 낡거나 더럽거나 손상되어 그 시설로 의약품등을 제조하면 의약품등이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으면 시설을 개수(改修)하도록 명하거나 개수가 끝날 때까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할 수 있다.

**제75조(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의약품등의 제조업 관리자 또는 약국의 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약국개설자에게 각각 그 관리자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5조의2(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 개설자가 제4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 개설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신고 수리의 취소(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위탁 제조판매업소·제조소 폐쇄(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의2에서 같다), 영업소 폐쇄(제42조제1항,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의2에서 같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책임이 없고 그 의약품등의 성분·처방 등을 변경하여 허가 또는 신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성분·처방 등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1.~7. 생략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11. 생략

**제7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3. 생략

**제78조(약사감시원)** ① 제69조제1항과 제7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에 약사감시원(藥事監視員)을 둔다.

② 약사감시원은 해당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0조(면허·허가·등록증 등의 갱신)**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은 자, 약국개설등록을 한 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허가증·등록증 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81조(업무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같음하여 10억원(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국개설자가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같음하는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7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9조(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검사기관등으로 지정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것

2. 의약품판매업자, 의약품 관측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1.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절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 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지도와 명령)**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 1.~9.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그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1조(의료유사업자)** 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다.

②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제92조(과태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고와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2. 제13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

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18.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6. 생략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소독업자가 휴업한 후 재개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독업자에게 소독의 실시에 관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5.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 등의 제거·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제75조(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 명령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명령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한다.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치료 권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중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감염인에게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3. 생략

**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2011. 6. 7.>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

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의 명령 또는 결정은 심사대상자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8. 생략

**제62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입원의 해제 사실을 그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하고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1차 입원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 기간 연장: 매 입원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켰을 때에는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그 사람을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임시 퇴원등)** ①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정신질환자의 증상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켜 그 회복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정신질환자를 임시 퇴원등을 시키고 그 사실을 보호의무자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또는 제59조(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시 퇴원등 명령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자가 임시 퇴원등을 한 후의 경과를 관찰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찰한 결과 증상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다시 입원등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임시 퇴원등을 한 정신질환자를 재입원 또는 재입소(이하 “재입원등”이라 한다)를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원등의 기간은 재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7. 생략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4.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 및 제5호에 해

당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5. (생략)

②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① 제6조제1항·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 명부(名簿)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讓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2.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 제22조에 따라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부패 또는 파손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해당 업소나 공장·창고, 대마초 재배지, 약국, 조제 장소, 그 밖에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3. 생략

**제42조(폐기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고된 마약류나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마약류 및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제조·판매·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43조(업무 보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신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써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45조(청문)** 허가관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6조(과징금처분)** ①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제51조의5(마약류 명예지도원)** ① 마약류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홍보·계몽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제69조(과태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의료기기법

**제18조의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①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위탁된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도 포함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2.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기의 위해방지·품질관리, 판매질서의 유지 또는 의료기기 관련 업무 수탁 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기취급자 또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임상시험기관·비임상시험실시기관·품질관리심사기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 기관·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판매중지·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조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위해의 정도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 또는 그 밖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그 사실을 공표하게 할 수 있다.

1.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
2.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품을 폐기하게 하거나 봉합 또는 봉인,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5조(사용중지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하여 사용 중인 의료기기가 제33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거나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의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인증·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인증·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1.~25. 생략

**제39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른 허가, 인증, 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제37조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40조(의료기기 감시원)** ①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기기 감시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감시원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제56조(과태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4조(신고증의 재발급) 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신고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신고증을 첨부(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결핵예방법

제5조(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결핵검진등)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1.~4. 생략

제12조(결핵예방접종)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은 “결핵예방접종”으로 본다.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接客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4조(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된 자를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제15조(입원명령)**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원명령의 통지는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중일 경우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의 대상임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결핵환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

2.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장 등의 집단 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 치료 및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준수
2.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

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① 제44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① 제44조제1항제1호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항공안전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

②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말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46조의2(구급차 운행연한)** ① 구급차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연한 및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구급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운행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지도·감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6. 생략

**제5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의 취소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3. 제55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의 취소 및 폐쇄 명령

**제57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7. 생략
- ②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등록)**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이하 “개설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5. 생략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 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이 제3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고쳐 적거나 재발급하고, 변경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③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관계 변동사항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예산 증·감이 발생하지 않음

#### 2. 미첨부 근거(이유) 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증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첨부

#### 4. 작성자

- 작성자: 주 무 관 행정6급 정주하
- 검토자: 의회법무팀장 행정6급 형은자
- 결재자: 기획예산과장 행정5급 임영우